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89

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전재수·허 영·김재원

임오경 • 박지원 • 김정호

신영대 · 위성곤 · 김기표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·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,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,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,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 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촉진지구 지정의 해제) ①	제27조(촉진지구 지정의 해제) ①
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	
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	
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
	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
	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
	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
	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
	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
	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